



수 신 회원사 대표

참 조

제 목 「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(안)」 찬성의견 개진 협조요청

1.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.

2.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중 휴대폰 사용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한 「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(안)」이 발의(김종양 의원, 의안번호 2219877, '26.7.9) 되었습니다.

3. 이에, 다음과 같이 국회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을 안내드리오니, 회원사께서는 입법예고 기간(~2026. 7. 22.) 내 찬성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내용

- 근로자가 이동·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 중 휴대폰 전화 사용 금지(안 제40조의2)
-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제175조제6항제3호)

나. 의견작성 방향 : 찬성의견 중심 간략 작성

다. 의견제출 방법 :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

(<https://pal.assembly.go.kr/napal/main/main.do>)

※ 로그인 → 법률안 검색·선택 → 의견작성·등록(세부사항 붙임3 참조)

라. 입법예고기간 : 2026. 7. 22.(수)까지

- 붙임 : 1.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
2.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요청 1부
3.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부. 끝.

※ 붙임자료는 우리도회 홈페이지(www.kosca38.or.kr) - 시·도소식 - 최신공문 6570번 게시물 참고

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



담당자 제도개선실 주임 김기범 과장 이정훈 실장 차성호

시행 전건협 경남 제501호 (2026. 7. 16)

우5139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10(전문건설회관 2층)

전화 055-288-8117 전송 055-238-1733 / 전자우편 kkbeom@kosca.or.kr